

# 1. 여비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2조(여비의 종류) 여비를 철도임, 선임, 항공임, 자동차임, 일비, 식비, 숙박비, 이전비 및 가족여비로 구분한다.	제2조(여비의 종류) 여비를 철도임, 선임, 항공임, 자동차임, 일비, 식비, 숙박비, <b>준비금</b> , 이전비 및 가족여비로 구분한다.	준비금 항목 신설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2. (생략)  (신설)  3. “이전비”라 함은 신규 부임하는 교원이 생활 근거지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.	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2. (현행유지) <b>3. “준비금”이라 함은 사전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외출장 시 비자 발급비, 여행자보험가입비 등을 말한다.</b> 4. “이전비”라 함은 신규 부임하는 교원이 생활 근거지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.	준비금 용어 정의
제25조(동일지역 출장자의 여비) ① 동일지역(시, 읍, 면)의 <u>출장자에게는 교통비를 정액(10,000원)으로 지급하며</u> 동일인 1일 2회 출장은 불인정한다. (이하 생략)	제25조(동일지역 출장자의 여비) ① 동일지역(시, 읍, 면)의 <u>출장자의 여비는 정액(20,000원)으로 지급하며</u> 동일인 1일 2회 출장은 불인정한다. (이하 현행유지)	동일지역 출장비 금액 변경 (1만원 → 2만원)
제27조(지급기준) ① 출장자에게는 교통비, 일비, 숙박비, <u>및 식비를 지급한다.</u> 다만, 이를 초청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②~④ (생략)  (신설)	제27조(지급기준) ① 출장자에게는 교통비, 일비, 숙박비, <b>식비 및 준비금을 지급한다.</b> 다만, 이를 초청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②~④ (생략) <b>⑤ 준비금은 실비로 지급한다.</b>	준비금 실비정산 조항 추가